

## 한국은행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금융기관)**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제주본부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 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제주본부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제3조(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한도, 특별지원한도 및 일반지원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추천기업
6.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7.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8. 전입기업
9. 수출관련기업
10. 소재·부품 생산기업
11.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2. 명절·재해 자금 등

13 기타 지원기업

14.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2호(벤처기업), 제3호(혁신기업), 제4호(녹색기업), 제7호(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제9호(수출관련기업), 제11호(농림수산업 관련기업)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제주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제주본부의 전략지원 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

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주본부장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및 업종제한은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

**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제주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 71102업종, 71201업종, 71202업종, 861~862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

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 배정한다.

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⑦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대출은 최초대출일로부터 최장 5년간 지원하되 동 기간 내 연장이 가능하며, 토지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 지원기업)** 본부장은 제4조제1항 제12호(명절·재해 자금) 및 제13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 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 대출 포함**)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한국은행 제주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은행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창업중소기업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6.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 이내에서 위규 사유별로 배정한도 감축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sup>2)</sup>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8. 11. 1(1998.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9. 3. 1(1999. 3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1999. 11. 1(1999.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은 1999. 9. 1(1999. 9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1. 기본한도 배정관련 대출금리별 가중치 부여방식 폐지
  - 2.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범위를 일반운전자금대출중 어음대출로 변경
  - 3. 기본한도 배정대상 대출실적에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대출금 제외
- ② (경과조치)
  - 1. 1999. 8. 31 이전에 선정된 우선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최초선정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우선지원한도를 배정하되 1999. 9. 1 이후 취급되는 대출금은 동 한도배정대상 대출잔액에서 제외한다.
  - 2. 1999. 9. 1 이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기본한도 배정대상으로 선정한 비제조업종은 이 기준에 의해 선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1. 1. 1(2001. 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 부칙 제②항제2호의 한국은행 총재가 기본한도 배정대상으로 선정한 비제조업종은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기준 제6조 제④항에 의거 당월 취급 실적을 다음달에 배정함에 따라 전월 취급분과 종전 기준에 의한 전전월 취급분이 같은 달에 배정되면서 발생하는 한도초과분은 이 규정 제6조 제③항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 12. 1(2001. 12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2. 11. 1(2002.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3. 10. 20.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제7조 제5항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대출취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4. 6. 4.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종전 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의 “1기관2기업 자문단 후원업체”에 대해서는 동 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의 만기시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2006. 11월 대출 취급분부터)

- 제2조(경과조치) ① 2006년 11월 신규대출 취급실적 보고시에는 2006년 10월중 우선지원한도 수혜대상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취급분 가운데 지원받지 못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2006년도 설·추석자금은 본 운용기준 우선지원한도에서 지원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2009. 8월 금융기관 대출취급분부터, 2009.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道 이차보전 수혜업체에 지원된 대출금은 만기시에 회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 배정 개시일은 2010년 11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 배정된 대출건에 대하여도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잔액기준으로 한도를 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제주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3년 12월 첫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제주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5년 7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9월 금융기관 대출취급분을 2015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

####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8월 금융기관 대출취급분을 2016년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

단, <별표3> 금융기관별 지원제외 대상 신용등급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6년 5월 금융기관 대출취급분에 대해 2016년 7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

####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7월 금융기관 대출취급분에 대해 2017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7년 9월 금융기관 대출취급분에 대해 2017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제주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sup>1)2)3)</sup>
A1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영업개시 후 3년 이내인 기업
A2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 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
A3	혁신기업	- 다음의 인증을 받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ISO인증</li> <li>o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의한 신제품인증(NEP)</li> <li>o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의한 신기술인증(NET)</li> <li>o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에 의한 신기술지정(NET)</li> <li>o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한 인증 및 검증(NET)</li> </ul> - <b>중소벤처기업부가</b>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b>Inno-Biz</b> ) - 사업목적과 관련 있는 특허 보유기업
A4	녹색기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 -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체 - <b>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기자재, 설비 생산업체</b> - <b>중소벤처기업부가</b> 선정한 우수 Green-Biz 기업 - <b>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KSIC 37~39)</b>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환경기술(ET)관련 업체 - <b>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b> 제품 생산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인증 제품 생산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해 지정된 녹색기업
A6	추천기업	-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우수 중소 제조업체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b>JDC(제주혁신성장센터)</b> 가 추천하는 우수업체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공예토산품 등의 전문 판매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다음의 관광업체로 동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등록, 허가 또는 신고, 지정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단,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에 한함)</li> </ul>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및 자동차대여사업체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의 제9호에 의한 "먹는 물 관련 영업"업체(단, 제주특별자치도산 샘물 관련업체에 한함)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 '정보기술 및 바이오' 관련 업체로서 <별표 1-1>에 해당하는 업체 -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가공·처리업체로서 <별표 1-1>에 해당하는 업체 -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로서 <별표 1-1>에 해당하는 업체 - '물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별표 1-1>에 해당하는 업체 - 제주지역 특산품(공예, 토산품) 제조업체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sup>1)2)3)</sup>
A9	전입기업	- 타지역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이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A10	수출관련기업	- 수출비중이 연간 매출액의 5%이상(최근 연도기준)인 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한 중소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어업자·농어업법인 포함)
A14	명절 및 재해 자금 등	- 계절적 자금 수요,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지원하는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 선박 관련 점검·보수·유지 및 부품 유통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토공사업, 포장공사업체 - 보관및창고업(KSIC 5210) -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통한 상담결과 또는 지역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A16	경기부진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 음식·숙박업 o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54조) o 향토음식점(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향토음식 판매업체) o 관광식당(「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 o 출장및이동음식점업(KSIC 5614), 기타간이음식점업*(5619) * 제과점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치킨전문점, 김밥및 기타간이음식점업, 간이음식포장판매전문점 2) 도매 및 소매업 : KSIC 45~47 (다만, 대형종합소매업(4711), 담배소매업(47222), 연료소매업(477), 약국(47811) 제외) 3)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 KSIC 752 4) 운수업 o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KSIC 49) o 항공운송업(KSIC 51) o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KSIC 52) 5) 조선·해운업 o 선박 및 보트 건조업(KSIC 311) o 수상운송업(KSIC 50)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3) 「A2.벤처기업」, 「A3.혁신기업」, 「A4.녹색기업」, 「A7.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 「A8.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 「A10.수출관련기업」, 「A11.소재·부품생산기업」, 「A13.농림수산업관련기업」, 「A14.명절 및 재해자금 등」, 「A15.기타지원기업」, 「A16.경기부진및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 부문은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

<별표1-1>

**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 해당 업종**

산 업	업 종	KSIC 코드 (제10차)
정보기술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전기 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공학 연구개발업	7012
바이오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203
	화장품 제조업	20423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농수축산물 가공·처리	동·식물·과실 등 가공 및 저장 처리업(도축업(1011) 제외)	101~103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4~107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
	음료 제조업	11
문화 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3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
	전문디자인업	732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
물류	육상 화물 운송업	493~494
	수상 화물 운송업(여객전용운송 제외)	50
	화물 취급업	5294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별표2>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점업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6213 생맥주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안마업	96122 마사지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한국은행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      년      월중)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연%)

신청정보				업체현황										대출내역									
일련 번호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sup>1)</sup>	신청 사유 <sup>2)</sup>	지원 부문 <sup>3)</sup>	지원 부문 여부 <sup>4)</sup>	신용 등급 <sup>5)</sup>	업종 <sup>6)</sup>	업체 소재지 <sup>7)</sup>	업체명	사업자 구분 <sup>8)</sup>	법인 등록번호 <sup>9)</sup>	사업자 등록번호 <sup>10)</sup>	대표자 성명	자금 구분 <sup>11)</sup>	취급 점포명	취급점 소재지 <sup>7)</sup>	대출일 <sup>12)</sup>	만기일 <sup>13)</sup>	대출 기간	대출 금액	금리 <sup>14)</sup>	채권 보전 <sup>15)</sup>	

- 주 : 1) 개별 대출건에 대한 고유 계좌번호, 업체당 "신규취급실적" 건별로 기재(업체당 신규취급실적이 한건 이상인 경우 건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신규" / "대환" / "만기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대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취급실적 변동보고서에 기존 취급분의 변동사유를 "만기상환"으로 하여 반드시 보고)  
 3) 지원부문별 코드는 "한국은행△△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4) 일반지원부문 해당시 "0", 전략지원부문 해당시 "1",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2"**, 특별지원부문 해당시 "3",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4"**로 기재  
 5)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재, 금융기관이 SOHO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에 별도의 신용등급을 부여할 경우 SOHO 대출은 "SOHO"라고 표시  
 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최종개정분) 5자리 숫자 기재  
 7) 광역시 지역은 시 단위, 일반 시 및 군 지역은 도/시·군 단위로 기재 : 예) 대전, 경남양산  
 8) "개인" / "법인" 으로 구분하여 기재  
 9) "-" 생략, 법인사업자만 법인등록번호란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란으로 남겨둬)  
 10) "-" 생략  
 11) "시설" / "운전" 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신청사유가 "대환"인 경우 대환일, **만기연장인 경우 실제 기한연장일을 기입**  
 13) 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인 경우 대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  
 14) 대출취급시 적용금리를 기재  
 15) "순수신용"(개인 및 법인에 의한 보증대출 포함) / "담보" / "보증"(신용보증기관 및 정부 보증) / "혼합"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한국은행 제주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      년      월중)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연%)

변동전보고내역							변동보고내역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sup>1)</sup>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금 구분	취급 점포명	변동전 잔액	변동 일련번호 <sup>2)</sup>	변동 사유 <sup>3)</sup>	변동사유 발생일 <sup>4)</sup>	변동 처리일 <sup>5)</sup>	변동 금액	변동후 잔액	비고

- 주: 1) 변동이력 관리를 위해 기존취급건의 각행 관리번호를 기입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건도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 "중도전액상환" / "중도일부상환" / "지원종료" / "휴폐업" / "최종부도"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 기재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휴폐업일, 최종부도일 등(다만 지원기간 종료로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로 기재)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를 기입(예: 3월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의 처리일자만 기재)

